

항 고 장

사 건 타경(타채, 타기)

항 고 인

주 소

위 사건에 관하여 귀 법원에서 20 . . .에 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 결 정 의 표 시

항 고 취 지

(예시)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첨부서류 1.

2.

20 . . .

위 항고인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 주의

1.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2.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위 1항의 항고이유서 또는 2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제130조 제4항).